#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행동지침

2014. 9. 5. 제정 2015. 10.21 개정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철도시설공단 (이하 "공단" 이라 한다)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공단의 임·직원(비정규직 포함)에 대하여 적용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단의 임직원 이외의 자로서 정부 부처 등 직무관련공무원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제2호 에서 규정한 직무관련자를 말한다.

### 제2장 행동지침

- 제4조(행동지침) ①공단의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를 대하는 경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공단의 명예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②공단의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제1호와 같은 식사(식대대납행위 포함) 및 교통·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열거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간소한 식사는 가능하다.
- 1. 공단 임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1회 이상의 누적된 식사대금을 직무관련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(금액 또는 장소를 알려주는 행위 포함, 구내식당을 포함)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2.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
  - 가. 장시간의 업무협의 등으로 식사가 불가피한 경우
- 나.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
- 3. "간소한 식사"이라 함은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, 인근 외부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(3만원 한도) 소액의 식사
- 4.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사를 하는 경우에 식사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하여 야 하나,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후 식사를 할 수 있다.

- ③공단의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유흥주점 등 사회 윤리적으로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향응·접대를 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.
- 1. 사회 윤리적으로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는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2조가 규정한 업소를 의미한다.
- 2.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물론,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유흥주점 등에 직무관련자와 함께 출입하는 것 을 금지한다.
- ④공단의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스크린골프, 골프연습장 등을 포함한 모든 골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도 골프 비용을 직무관련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.
- 1 .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
- 가. 정책의 수립·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나. 직무관련자인 친족(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)과 골프를 하는 경우
- 다.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서 직무관련자가 섞여있어 부득이 같이 하는 경우
- 2.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하는 경우 중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- ⑤공단의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의 사행성 행위는 금지한다. 사행성 행위의 범위는 마작, 화투, 카드 등,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.
- ⑥공단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"KR人 클린10훈" 및 "내·외부 고객과의 10대 약속"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. (신설 2015.10.21)
- ⑦공단 임원 및 부장이상 직원이 준수해야 할 "관리자 청렴행동수칙"은 별표3과 같다. (신설 2015.10.21)
- 8주요 직무별 소속직원이 준수해야 할 "직무별 청렴행동수칙"은 별표4와 같다. (신설 2015.10.21)
- **제5조(위반행위의 신고)** 이 지침에 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

### 제3장 보 칙

제6조(포상 및 징계) 이사장은 행동지침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추진에 현저히 기여하였 거나 행동지침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행동 강령 제45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 부 칙(2014.9.5.)

- ① 이 지침은 2014. 9. 15 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다.

## 부 칙 (2015.10.21)

이 지침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## KR 人 클린 10訓

- 1. (더치 페이)공단의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금지하고 있으나, 부득이 식사할 경우 "구내식당 이용 생활화" 외부 식당 이용시 "나의 밥값은 내가!"
- 2. (공용물의 사적 사용/수익행위 금지) 법인 카드는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고, 공용차량/항공 마일리지 등은 사적 용도로 사용 금지
- 3. (골프 금지)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행위 금지는 물론이고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자를 통한 콘도 및 골프 예약 행위도 금지
- 4. (과도한 음주 금지)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음주를 금지하여 임직원의 품위 유지 및 접대문화 근절
- 5. (내부정보 유출 금지) 업무상 발생하는 내부정보를 이메일 등을 통하여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금지
- 6. (업무시간내 업무협의) 전화 등을 통한 직무관련자와의 업무협의는 가급적 업무시간 내에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시간이외의 만남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
- 7. (알선/청탁 금지)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알선 및 청탁하는 행위 금지
- 8. (고객에게 자리 양보하기) 직무관련자와의 만남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, 부득이 만날 경우 출입문에서 안쪽에 위치한 좌석 및 소위 말하는 상석은 고객 에게 양보하여 우월적인 지위에 있지 않음을 몸소 실천하기
- 9. (회사 주소 사용하기) 업무 수행중 필요한 주소는 회사 주소를 사용토록 하고, 자택주소는 가급적 비공개
- 10. (개방된 자리에서 만나기) 직무관련자와의 만남이 부득이 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제 3자가 볼수 있는 개방된 장소를 이용
  - 경영진(집무실) : 업무관련 직원과 동석하기
  - 직 원(청렴고객지원실): 2인 이상이 함께하기

#### (별표 2) (신설 2015.10.21)

## 내 · 외부 고객과의 10대 약속

#### 가. 내부 고객과의 10대 약속

- 1. 직위를 이용하여 알선·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.
- 2. 직위를 이용하여 위법 · 부당 및 사적 업무지시를 하지 않겠습니다.
- 3. 업무상 발생하는 내부정보를 유출하지 않겠습니다.
- 4. 주어진 업무를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겠습니다.
- 5. 회의시간을 준수하고, 나의 의견은 짧게, 상대방의 의견은 경청하겠습니다.
- 6. 간단한 일(차. 복사 업무 등)은 스스로 처리하겠습니다.
- 7. 회식은 즐겁게 1차까지만, 음주는 각자 주량에 맞게 배려하겠습니다.
- 8. 업무 추진시 부서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- 9. 부서 이기주의를 타파하고, 타부서와 협력하겠습니다.
- 10.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솔선수범 하겠습니다.

#### 나. 외부고객과의 10대 약속

- 1,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투명하게 하겠습니다.
- 2.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습니다.
- 3. 협력기업으로부터 금품향응 및 편의제공은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.
- 4.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고, 사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.
- 5. 언제나 친절하게 설명하고, 상대방을 배려하겠습니다.
- 6. 업무처리는 지연·학연·혈연 등 연고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하겠습니다.
- 7. 자료요청은 충분한 기간을 드리고, 검토 및 확인은 신속하게 하겠습니다.
- 8. 업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.
- 9. 고객님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하겠습니다.
- 10. 회의시간은 미리 정하고,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.

### 관리자 청렴행동수칙

- 1.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특정 직무관련업체가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는 철도분야의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한다.
- 2.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주접대, 골프접대, 차량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지도, 받지도 아니한다.
- 3. 직무관련자를 공단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업체에 소개하여 불필요한 특혜 의혹 등이 발생하도록 하지 않는다.
- 4. 불필요한 오해 등이 생기지 않도록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만남을 자제한다.
- 5.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, 상품권, 전별금 등을 요구하지도, 받지도 아니한다.
- 6.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·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.
- 7. 관리자로서 근무평정, 성과평가, 상훈 등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.
- 8.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에 하위직원이나 인턴 등을 동원하지 아니한다.
- 9. 법인카드, 예산, 관용차량, 관사, 기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.
- 10. 외유성 출장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부적절한 출장을 가지 아니한다.

## 직무별 청렴행동수칙

#### 가. 계약관리 및 지원분야 소속지원

- 1. 공단의 공사·용역·구매 등의 입찰 등 계약 관리에 있어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.
- 2.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, 받지도 아니한다.
- 3. 철도분야의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업무기준 및 절차 등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#### 나. 재산 및 용지보상분야 소속직원

- 1. 대민 업무처리에 있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,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.
- 2. 재산의 사용허가, 임대, 매각, 토지보상협의 등에 있어 연고관계 및 이해관계 등에 따라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.
- 3.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관련 업무기준·절차 등에 대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 하기 쉽도록 충분하게 설명한다.

#### 다. 철도건설관리분야 소속직원

- 1.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과 직무관련업체가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인지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.
- 2. 설계변경, 기성대금 지급, 공법 선정,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3. 계약상의 업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대가 지급 없이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.